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 소속기관에 병역판정검사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잠복결핵 검진을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8일에서 2024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고,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25일 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5일에서 2024년 2월 25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병무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00. ~ 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2022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 2월 25일”을 “2024년 2월 25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659”를 각각 “1,662”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648”을 “1,651”로 한다.

별표 5의 대체역 심사위원회 2개 과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6월 9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6 중 1. 제30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2월 28일) “2022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8일”로 하고, 2. 제30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 2022년 2월 25일) “2022년 2월 25일”을 “2024년 2월 25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한시정원) ① 병역판정검사 중 참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2년 2월 28일까지</u>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병무청 소속기관에 둔다.	제30조(한시정원) ① ----- ----- ----- ----- <u>2024년 2월 28일</u> ----- ----- -----.
②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2월 25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병무청 소속기관에 둔다.	② ----- ----- ----- - <u>2024년 2월 25일</u> ----- ----- -----.

신·구정원대비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1,659</u>	• <u>1,662</u>	+ 3
일반직 계	<u>1,659</u>	<u>1,662</u>	+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648</u>	<u>1,651</u>	+ 3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3